

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19. . .

제출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강동문화복지회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복지회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위탁 운영 사항 중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, 기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만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(안 제20조)
 - 개정안 : 복지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아래사항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수정안 : 복지회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.(개정안 제20조 제1호~제4호 삭제)

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”을 “복지회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”으로, “수 있으며, 아래 사항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”를 “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7조(사용자의 책임) ① (생략) ② <u>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, 망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<u><신설></u>	제17조(손해배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사용자 및 이용자(기타이용자포함)가 ---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손해배상을 --.</u> 제20조(위탁 운영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아래 사항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다.</u> 1. <u>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</u> 2. <u>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</u> 3. <u>기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</u> 4. <u>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</u>	제17조(손해배상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제20조(위탁 운영) --- ----- ----- <u>복지회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</u>----- ----- ----- 수 ----- ----- -----.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
제20조 (생략)	제21조 (현행 제20조와 같음)	제21조 (개정안과 같음)